

NH Bank legal brief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2022. 5. 6.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14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분야에서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과결과에 따른 비중요업무라 하더라도 중요업무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가 완화되고,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등 사전·사후적 조치에 대하여도 별도의 적합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CSP 평가항목 축소 및 대표평가제 도입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이러한 CSP평가는 평가항목이 141개로 많고 항목간에도 중복이 존재하여 클라우드 이용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금융회사의 CSP 평가를 다른 회사가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CSP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제기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현행 CSP 평가항목을 간소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고, 특히 중



복적인 평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존 CSP 평가항목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금융분야에서도 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전보고 의무 폐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이 존재하였고, **클라우드를 통해 중요업무를 수행하려는 금융회사는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u>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유사·중복 사항을 간</u>소화하고, 보고절차도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서류제출, 보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 · 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 적용

현행 망분리 규제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u>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규제를 완화</u>하고,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특히 비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u>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시 내부망에서도 가능하</u>도록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보안관제강화를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여, 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 등을 금융회 사에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5월 2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의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들을 수있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이번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조치는 내부기준 수립 등 보완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에 따른 규제개선 내용,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 추진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나 규제샌드박스, 비조치의견 신청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완화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2 02. 2080. 8741

2 02. 2080. 8745

2 02. 2080. 8739

@ hwonpark

@ eunho_noh

@ jeyun8835

@nonghyup.com

@nonghyup.com

@nonghyup.com